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議案 番號	200
----------	-----

提出年月日 : 1996. . .
提出者 : 政 府

提案理由

세계경제발전과 선·후진국간의 經濟協力 및 世界貿易의 확대를 목표로하는 이 協約에 가입함으로써 동 機構를 중심으로 한 國際 經濟體制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經濟·貿易 協力を 증진시킴과 더불어 우리경제·사회체제의 先進化를 도모 함.

主要骨子

- 가. 協約(前文, 本文 21個條 및 追加議定書로 構成)
- 機構는 會員國의 經濟成長을 통한 世界經濟 發展, 開發途上國의 經濟成長 支援 및 多者間 自由貿易原則에 의한 世界貿易 擴大 推進을 목표로 함(제1조).

- 機構는 그 目的達成을 위하여 會員國을 拘束하는 決定을 채택하거나 會員國에 대한 勸告 등을 행할 수 있으며, 決定 및 勸告는 會員國의 相互 合意에 의하여 채택되고, 會員國의 憲法上의 國內節次를 이행할 때까지 어떠한 決定도 해당 會員國을 拘束하지 아니함(제5, 6조).
- 理事會는 모든 會員國으로 구성되며, 機構의 規範을 制定하는 權限을 가짐. 理事會는 閣僚會議 또는 常駐代表會議로 開催되며, 執行委員會 및 기타 필요한 補助機關을 設置할 수 있음(제7, 9조).
- 會員國의 義務를 負擔할 용의가 있는 어떠한 政府에 대해서도 理事會는 協約에 加入하도록 招請을 決定할 수 있으며, 기탁처인 프랑스정부에 加入書を 寄託함과 동시에 協約은 發效함(제16조).

나. 機構에 관한 協約加入 招請協定

(1) 構成

‘大韓民國의 經濟協力開發機構 會員國 義務受諾에 관한 大韓民國政府의 宣言文’과 ‘大韓民國에 대한 經濟協力開發機構에 관한 協約 加入을 초청하는 理事會 決定’으로 構成

(2) 機構協約과의 關係

加入招請協定은 機構協約加入을 위한 事前節次로서 協約加入書 寄託 이전에 署名되며, 協約加入書 寄託日字로부터 동 招請協定에서 受諾한 機構規範의 이행의무를 지게됨.

(3) 大韓民國 政府 宣言文의 요지

- 機構 加入 협의과정에서 합의된 機構 規範(決定, 勸告)의 受諾과 留保에 관한 內容을 명시
- 主要內容
 - 機構 會員國으로서의 義務부담과 加入書 기탁시 유효한 規範에의 加入을 宣言
 - 兩大自由化規約(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자본이동자유화), 國際投資 및 多國籍企業에 대한 宣言, 農業, 環境, 財政, 觀光分野 規範中 留保를 희망하는 部分 명시
 - 閣僚宣言상의 政策目標 同參, 制限的 會員國間의 活動 및 機關에의 參與意向 표시
 - 향후 여타 國際機構나 그룹에 機構 會員國 立場에서 參與

(4) 理事會招請決定의 요지

宣言文上の 조건으로 韓國의 協約加入招請을 決定

參考事項

가. 協約加入 經緯

- 93.7.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6년 OECD 가입” 계획 확정
- 95.3. 外務部長官 명의 가입신청서 제출
- 95.11.-96.9. 分野別 委員會 가입 심사
- 96.10.11. 理事會, 한국 가입초청 결정
- 96.10.25. 協約가입초청협정 서명(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에 대한 정부의 가입을 헌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붙임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1. 가입 목적

- 세계경제발전과 선·후진국간의 경제협력 및 세계무역의 확대를 목표로하는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동 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경제·무역협력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우리경제·사회체제의 선진화를 도모함.

2. 가입 경위

- 93.7.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6년 OECD 가입” 계획 확정
- 95.3. 외무부장관 명의 가입신청서 제출
- 95.11.-96.9. 분야별 위원회 가입 심사
- 96.10.11. 이사회, 한국 가입초청 결정
- 96.10.25. 협약가입초청협정 서명(파리)

3. 주요 내용

- 가. 협약(전문, 본문 21개조 및 추가의정서로 구성)
 - 기구는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세계경제 발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지원 및 다자간 자유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함(제1조).

- 기구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채택하거나 회원국에 대한 권고 등을 행할 수 있으며, 결정 및 권고는 회원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채택되고, 회원국의 헌법상의 국내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어떠한 결정도 해당 회원국을 구속하지 아니함(제5, 6조).
- 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기구의 규범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짐. 이사회는 각료회의 또는 상주대표회의로 개최되며, 집행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제7, 9조).
- 회원국의 의무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 어떠한 정부에 대해서도 이사회는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을 결정할 수 있으며, 기탁처인 프랑스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과 동시에 협약은 발효함(제16조).

나. 기구에 관한 협약가입 초청협정

(1) 구성

‘대한민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의무수락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의 선언문’과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을 초청하는 이사회 결정’으로 구성

(2) 기구협약과의 관계

가입초청협정은 기구협약가입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협약 가입서 기탁 이전에 서명되며, 협약가입서 기탁일자로부터 동 초청협정에서 수락한 기구규범의 이행의무를 지게 됨.

(3) 대한민국 정부 선언문의 요지

- 기구 가입 협의과정에서 합의된 기구 규범(결정, 권고)의 수락과 유보에 관한 내용을 명시
- 주요내용
 - 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부담과 가입서 기탁시 유효한 규범에의 가입을 선언
 - 양대자유화규약(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자본이동자유화),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언, 농업, 환경, 재정, 관광분야 규범중 유보를 희망하는 부분 명시
 - 각료선언상의 정책목표 동참, 제한적 회원국간의 활동 및 기관에의 참여의향 표시
 - 향후 여타 국제기구나 그룹에 기구 회원국 입장에서 참여

(4) 이사회초청결정의 요지

선언문상의 조건으로 한국의 협약가입초청을 결정

4. 기대 효과

-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질서형성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OECD내 선진정책 및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경제제도의 선진화 및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촉진함.

5. 국회가입동의 사유

-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이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 및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오스트리아 공화국, 벨기에 왕국, 캐나다, 덴마크 왕국, 프랑스공화국, 독일 연방공화국, 그리스 왕국, 아이슬란드 공화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네덜란드 왕국, 노르웨이 왕국, 포르투갈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왕국, 스위스 연방, 터키 공화국, 영국, 미합중국의 정부는

경제력과 번영이 국제연합의 목적달성, 개인의 자유의 보전 및 전반적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고,

이들 나라 정부는 그들간에 발전되어온 협력의 전통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들이 구주경제협력기구에의 참여를 통하여 달성한 구주의 경제적 부흥과 발전이 그러한 전통의 강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통을 새로운 과업과 보다 폭넓은 목표에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을 인식하며,

보다 폭넓은 협력이 세계의 여러국민간의 평화적이고 협조적인 관계에 긴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하고,

이들 나라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들 나라 경제의 고도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또한 그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인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협의·협력을 통하여 이들 나라의 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결의하며,

경제적 선진국이 경제적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를 전력을 다하여 원조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고 믿고,

세계무역의 가일층의 확대가 각국의 경제적 발전 및 국제경제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며,

이러한 목적을 이들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여타 국제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의무 또는 이들이 당사국이 되어 있는 협정에 규정된 의무와 부합하는 방법으로 추구할 것을 결의하며,

구주경제협력기구를 경제협력개발기구로 재편하기 위한 아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경제협력개발기구 (이하 “기구”라 함)의 목적은 다음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

- (가) 회원국의 재정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 및 고용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달성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함.
- (나) 경제적 발전도상에 있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함.
- (다) 국제적 의무에 따라 다자간, 무차별의 기초위에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함.

제 2 조

회원국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데 합의한다.

- (가) 회원국의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함.
- (나) 과학, 기술분야에서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연구를 장려하며, 직업훈련을 촉진함.
- (다) 경제 성장과 국내 및 대외적인 재정안정을 달성하고, 자국 또는 타국의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함.

- (라) 재화 및 용역의 교환과 경상지불에 대한 장애를 축소 또는 폐지하며,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유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
- (마) 기술원조의 수혜 및 수출시장의 확대 확보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 특히 이들 나라에 대한 자본공여를 통하여 개발도상에 있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

제 3 조

회원국은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고, 제2조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 (가)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기구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기구에 제공함.
- (나) 지속적인 기초위에서 상호 협의를 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합의된 사업에 참여함.
- (다) 긴밀히 협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된 조치를 취함.

제 4 조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는 기구의 회원국이 된다.

제 5 조

기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 (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채택함.
- (나) 회원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함.
- (다) 회원국·비회원국 및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함.

제 6 조

1. 결정 및 권고는, 기구가 특별한 경우에 전원 일치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회원국의 상호 합의에 의해 채택된다.

2. 각 회원국은 하나의 표결권을 가진다. 어느 회원국이 결정 또는 권고를 채택하기 위한 표결에 기권을 한 경우, 그 기권은 결정이나 권고를 무효화시키지 아니하며 그 결정이나 권고는 기권한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에 적용된다.

3. 어떠한 결정도 어느 회원국이 그 헌법상의 요구절차를 이행할 때 까지는 해당 회원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른 회원국들은 당해 결정이 자국에 잠정적으로 적용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 7 조

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기구의 모든 규범을 제정하는 모체가 된다. 이사회는 각료회의 또는 상주대표회의로 회합한다.

제 8 조

이사회는 매년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2인을 지명한다. 의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및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0 조

1. 이사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무총장 1인을 5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임명하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사무차장 또는 사무차장보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2. 사무총장은 상주대표의 회합에 의한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이사회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기구의 다른 기관에 대하여 제안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1.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승인한 조직계획에 따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을 임명한다. 직원규칙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구의 국제적 성격에 비추어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 및 직원은 어떠한 회원국 또는 기구외의 어떤 정부 또는 기관의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기구는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가) 비회원국 또는 여타 조직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함.

(나) 비회원국 또는 여타 조직과의 관계를 설정, 유지함.

(다) 비회원국 정부 또는 여타 조직에 대하여 기구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초청함.

제 13 조

1951년 4월 18일의 파리조약 및 1957년 3월 25일의 로마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구주공동체가 기구에서 가지는 대표권은 이 협약 제1추가정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 14 조

1.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각기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거나 수락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기탁국 정부로 이에 지정된 프랑스 공화국 정부에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효력을 발생한다.

(가) 1961년 9월 30일전에는 모든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일자

(나) 1961년 9월 30일에는 그 일자까지 15개국 또는 그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할 경우 그 서명국에 대하여 그 일자. 1961년 9월 30일 이후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는 서명국에 대하여는 기탁한 일자.

(다) 1961년 9월 30일 이후 이 협약의 서명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시기에는 15개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의 기탁을 하였을 경우 그 기탁일자. 그 이후 그밖의 서명국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일자.

4. 이 협약 발효당시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서명국은 기구와 그 서명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조건에 따라서 기구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5 조

구주경제협력기구의 재편은 이 협약이 발효한 때에 이루어지며, 구주경제협력기구의 목적·기관·권능 및 명칭은 그 때부터 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주경제협력기구가 가지는 법인격은 기구에서 계속된다. 다만, 구주경제협력기구의 결정, 권고 및 결의가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 조

이사회는, 회원국의 의무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 어떠한 정부에 대해서도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전원일치로 한다. 다만, 이사회는 특정한 경우에 기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원일치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결정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가입은 기탁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에 발효한다.

제 17 조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기탁국 정부에 대하여 12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 18 조

기구의 본부는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파리에 둔다.

제 19 조

기구의 법적 능력과 기구, 기구의 직원, 회원국 대표의 특권, 면제 및 면책은 이 협약의 제2추가정서에서 규정된 바와 같다.

제 20 조

1.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채택한 재정규칙에 따라 매년 이사회에 승인을 구하기 위하여 연간예산, 회계보고서, 이사회가 요구하는 보조예산을 제출한다.

2. 이사회가 승인한 기구의 일반경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정된다. 그 밖의 경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된다.

제 21 조

기탁국 정부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접수하거나 종료 통보를 받았을 경우 모든 계약당사자 및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를 통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위임자는 정당하게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0년 12월 14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로 된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협약 원본은 기탁국 정부에 기탁되고, 기탁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에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제1추가협정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서명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1951년 4월 18일의 파리조약 및 1957년 3월 25일의 로마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구주공동체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지는 대표권은 동 조약의 제도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2. 구주경제공동체 및 구주원자력공동체의 위원회와 구주석탄철강공동체의 고위기관도 기구의 작업에 참여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위임자는 정당하게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60년 12월 14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로 된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의정서 원본은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기탁되고, 기탁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에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제2추가의정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기구”라 함)에 관한 협약의 서명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기구는 법적 능력을 가지며 기구, 기구의 직원, 회원국 대표는 다음의 특권, 면제 및 면책을 향유한다.

(가) 1948년 4월 16일의 구주경제협력협약의 체결당사자 영토내에서는 그 협약의 제1추가의정서에 규정된 법적능력, 특권, 면제 및 면책

(나)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정부와 기구간에 체결된 법적능력, 특권, 면제 및 면책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에 규정된 법적능력, 특권, 면제 및 면책

(다) 미국에서는 1950년 6월 27일 행정명령 제10133호에 규정된 국제기구 면제법상의 법적능력, 특권, 면제 및 면책

(라) 여타 지역의 경우, 해당정부와 기구간 체결된 법적능력, 특권, 면제 및 면책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에 규정된 법적능력, 특권, 면제 및 면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위임자는 정당하게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60년 12월 14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로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의정서 원본은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기탁되고, 기탁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에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Austria, the Kingdom of Belgium, Canada, the Kingdom of Denmark, the French Republic,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Kingdom of Greece, the Republic of Iceland, Ireland, the Italian Republic,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he Kingdom of Norway, the Portuguese Republic, Spain, the Kingdom of Sweden, the Swiss Confederation, the Turkish Republic,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SIDERING that economic strength and prosperity are essential for the attainment of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the preservation of individual liberty and the increase of general well-being;

BELIEVING that they can further these aims most effectively by strengthening the tradition of co-operation which has evolved among them;

RECOGNISING that the economic recovery and progress of Europe to which their participation in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has made a major contribution, have opened new perspectives for strengthening that tradition and applying it to new tasks and broader objectives;

CONVINCED that broader co-operation will make a vital contribution to peaceful and harmonious relations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RECONGISING the increasing interdependence of their economies;

DETERMINED by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to use more effectively their capacities and potentialities so as to promote the highest sustainable growth of their economies and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their peoples;

BELIEVING that the economically more advanced nations should cooperate in assisting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the countries in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RECOGNISING that the further expansion of world trad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avo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and th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nd

DETERMINED to pursue these purpos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ir obligations in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r institutions in which they participate or under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a party;

HAVE THEREFORE AGREED on the following provisions for the reconstitution of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as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rticle 1

The aim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reinafter called the "Organisation") shall be to promote policies designed:

- (a) to achieve the highest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and a rising standard of living in Member countries, while maintaining financial stability, and thu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 (b) to contribute to sound economic expansion in Member as well as non-memb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 (c)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world trade on a multilateral, non-discriminatory basi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Article 2

In the pursuit of these aims, the Members agree that they will, both individually and jointly:

- (a)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their economic resources;
- (b)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iel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ir resources, encourage research and promote vocational training;
- (c) pursue policies designed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internal and external financial stability and to avoid developments which might endanger their economies or those of other countries;
- (d) pursue their efforts to reduce or abolish obstacles to th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and current payments and maintain and extend the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s; and
- (e)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both Member and non-memb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b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flow of capital to those countries, having regard to the importance to their economies of receiving technical assistance and of securing expanding export markets.

Article 3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aims set out in Article 1 and to fulfilling the undertakings contained in Article 2, the Members agree that they will:

- (a) keep each other informed and furnish the Organisation with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ccomplishment of its tasks;
- (b) consult together on a continuing basis, carry out studies and participate in agreed projects; and
- (c) co-operate closely and where appropriate take co-ordinated action.

Article 4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b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Article 5

In order to achieve its aims, the Organisation may:

- (a) take decisions whic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shall be binding on all the Members;
- (b) make recommendations to Members; and
- (c) enter into agreements with Members, non-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rticle 6

1. Unless the Organisation otherwise agrees unanimously for special cases, decisions shall be taken and recommendations shall be made by mutual agreement of all the Members.

2. Each Member shall have one vote. If a Member abstains from voting on a decision or recommendation, such abstention shall not invalidate the decision or recommendation, which shall be applicable to the other Members but not to the abstaining Member.

3. No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any Member until it ha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its own constitutional procedures. The other Members may agree that such a decision shall apply provisionally to them.

Article 7

A Council composed of all the Members shall be the body from which all acts of the Organisation derive. The Council may meet in sessions of Ministers or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Article 8

The Council shall designate each year a Chairman, who shall preside at its ministerial sessions, and two Vice-Chairmen. The Chairman may be designated to serve one additional consecutive term.

Article 9

The Council may establish an Executive Committee and such subsidiary bodies as may be requir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aims of the Organisation.

Article 10

1. A Secretary-General responsible to the Council shall be appointed by the Council for a term of five years. He shall be assisted by one or more Deputy Secretaries-General or Assistant Secretaries-General appointed by the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retary-General.

2. The Secretary-General shall serve as Chairman of the Council meeting at sessions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He shall assist the Council in all appropriate ways and may submit proposals to the Council or to any other body of the Organisation.

Article 11

1. The Secretary-General shall appoint such staff as the Organisation may require in accordance with plans of organisation approved by the Council. Staff regulations shall be subject to approval by the Council.

2. Having regard to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Organisation, the Secretary-General, the Deputy or Assistant Secretaries-General and the staff shall neither seek n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of the Members or from

any Government or authority external to the Organisation.

Article 12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Council may determine, the Organisation may:

- (a) address communications to non-member States or organisations;
- (b) establish and maintain relations with non-member States or organisations; and
- (c) invite non-member Governments or organisation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of the Organisation.

Article 13

Representation in the Organis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stablished by the Treaties of Paris and Rome of 18th April, 1951, and 25th March, 1957, shall be as defined in Supplementary Protocol No. 1 to this Convention.

Article 14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or accepted by the Signator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2.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hereby designated as depositary Government.

3.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 (a) before 30th September, 1961, upon 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all the Signatories; or

- (b) on 30th September, 1961, if by that date fifteen Signatories or more have deposited such instruments as regards those Signatories; and thereafter as regards any other Signatory upon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 (c) after 30th September, 1961, but not later than two years from the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upon the deposit of such instruments by fifteen Signatories, as regards those Signatories; and thereafter as regards any other Signatory upon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4. Any Signatory which has not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when the Convention comes into force may take part in the activities of the Organisation upon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Organisation and such Signatory.

Article 15

When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reconstitution of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shall take effect, and its aims, organs, powers and name shall thereupon be as provided herein. The legal personality possessed by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shall continue in the Organisation, but decisions, recommendations and resolutions of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shall require approval of the Council to be effective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rticle 16

The Council may decide to invite any Government prepared to assume the obligations of membership to accede to this Convention.

Such decisions shall be unanimous, provided that for any particular case the Council may unanimously decide to permit abstention, in which ca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6, the decision shall be applicable to all the Members. Accession shall take effect upon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epositary Government.

Article 17

Any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 itself by giving twelve months' notice to that effect to the depositary Government.

Article 18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sation shall be in Paris, unless the Council agrees otherwise.

Article 19

The legal capacity of the Organisation and the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of the Organisation, its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to it of the Members shall be as provided in Supplementary Protocol No. 2 to this Convention.

Article 20

1. Each year, in accordance with Financial Regulations adopted by the Council,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esent to the Council for approval an annual budget, accounts, and such subsidiary budgets as the Council shall request.

2. General expenses of the Organisation, as agreed by the Council, shall be apportioned in accordance with a scale to be decided upon by the Council. Other expenditure shall be financed on such basis as the Council may decide.

Article 21

Upon the receipt of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r of any notice of termination, the depositary Government shall give notice thereof to all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s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duly empowered, have appended their signatures to this Convention.

DONE in Paris, this fourteenth day of December, Nineteen Hundred and Sixty,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Government, by whom certified copies will be communicated to all the Signatories.

SUPPLEMENTARY PROTOCOL NO. 1 TO THE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SIGNATORIES of the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AVE AGREED as follows:

1. Representation i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stablished by the Treaties of Paris and Rome of 18th April, 1951, and 25th March, 1957,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 provisions of those Treaties.

2. The Commission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of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s well as the High Authority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shall take part in the work of that Organis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duly empowered, have appended their signatures to this Protocol.

DONE in Paris, this fourteenth day of December, Nineteen Hundred and Sixty,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by whom certified copies will be communicated to all the Signatories.

SUPPLEMENTARY PROTOCOL NO. 2 TO THE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SIGNATORIES of the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reinafter called the “Organisation”);

HAVE AGREED as follows:

The Organisation shall have legal capacity and the Organisation, its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to it of the Members shall be entitled to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as follows:

- (a)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f 16th April, 1948, the legal capacity,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provided for in Supplementary Protocol No. 1 to that Convention;
- (b) in Canada, the legal capacity,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provided for in any agreement or arrangement on legal capacity,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entered into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Organisation;
- (c) in the United States, the legal capacity,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under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Immunities Act provided for in Executive Order No. 10133 of 27th June, 1950; and

(d) elsewhere, the legal capacity,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provided for in any agreement or arrangement on legal capacity,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entered into between the Government concerned and the Organis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duly empowered, have appended their signatures to this Protocol.

DONE in Paris, this fourteenth day of December, Nineteen Hundred and Sixty,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by whom certified copies will be communicated to all the Signatories.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 초청 협정

대한민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의무수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선언문

(1996년 10월 9일)

대한민국 정부는,

1960년 12월 14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이하 “협약”이라 함)과 동 협약 제1 및 제2추가협정을 고려하고,

동 기구의 이사회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 어떠한 정부에 대해서도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협약 제16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수락의 일반선언

1. 대한민국 (이하 “한국”이라 함)은 협약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동 기구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부담하고, 1960년 12월 동 기구 준비위원회의 보고서로부터 도출된 견해와 목적을 수락하며, 부속서를 포함한 이 선언문에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탁시에 발효중인 동 기구의 규범에 가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규범 일부에 관한 입장 표명

2. 한국은 한국이 가입하기로 제의한 일부 규범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자유화 규약

한국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및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목적을 승인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 및 약속을 수락할 용의가 있다. 한국은 양대자유화 규약의 제2조 나항에 따른 유보를 제외한다. 동 유보내용은 이 선언문의 부속서 1과 2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은 정부가 지향하는 안정적 거시경제여건을 전제로, 현존하는 자본통제를 향후 5년

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투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정부에 의하여 1976년 6월 21일 채택되고 1979년 6월 13일, 1984년 5월 17일 및 1991년 6월4일-5일에 개정된 국제투자과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약속을 수락한다. 한국은 이 선언문 부속서 3에 명시된 대로 내국민대우에 대한 일부 예외를 두는 것을 제외한다.

농업

농업분야의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은 당분간 농업용 트랙터 공인 시험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표준규약을 제정하는 이사회 결정에만 참여하고자 한다. [C(87)53(Final)]

환경

- 화학물질 평가데이터의 상호 수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
[C(81)30(Final) 및 그 개정]
- 우수실험실 운영원칙에 부합하는 이사회 결정·권고
[C(89)87(Final) 및 그 개정]

입장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1997년까지 개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시험 지침과 우수실험실운영원칙이 산업용 화학물질에 적용되도록 하여, 상기 결정과 결정·권고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한다.

- 화학물질 평가에서의 최소 사전마케팅데이터에 관한 이사회 결정
[C(82)196(Final)]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시에 제출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이사회 권고 [C(83)96(Final)]
- 화학물질의 기밀성데이터의 교환에 관한 이사회 권고 [C(83)97(Final)]
- 화학물질의 비기밀성데이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목록에 관한 이사회 권고
[C(83)98(Final)]

입장

한국은 기밀성 및 비기밀성데이터 교환의 통제를 위한 효과적 정보공유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하여 1997년말까지 기밀성데이터의 상호 교환을 위한 신규 규정과 절차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1997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상기 규범의 이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내용, 시험절차 및 신규화학물질의 독성검사 기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한국은 1998년까지 수입검정, 기존 화학물질 목록 확대, 데이터의 지적재산권과 기밀성 보호를 위한 절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화학물질 관리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중인 절차와 조화되도록 한

다.

- 기존 화학물질의 체계적 조사에 관한 이사회 결정·권고
[C(87)90(Final)]
- 기존 화학물질의 조사협력 및 위험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정·권고
[C(90)163(Final)]

입 장

한국은 1997년말까지 대량생산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한 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동 대량생산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활동에 참가할 계획이다. 한국은 다음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 유통량, 용도, 독성, 환경유해성.

- 국경간 손해 초래 가능한 사고에 관한 정보 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정
[C(88)84(Final)]
- 유해물질과 관련된 사고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 공중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공공 참여에 관한 이사회 결정·권고 [C(88)85(Final)]

입 장

1997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기업에 대해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할 법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공중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정보제출의무는 C(88)85(Final) 규정의 준수를 보장한다.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이사회 결정
[C(88)90(Final) 및 그 개정]

입 장

한국은 바젤협약에 반영된 상기 결정의 규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다. 상기 결정의 완전한 준수를 위하여 한국은 1997년까지 1992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제폐기물확인규약 도입에 필요한 이행조치를 1998년까지 취할 것이다.

- 재생작업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통제에 관한 이사회 결정
[C(92)39(Final) 및 그 개정]

입 장

적색단계관리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황갈색 목록상의 모든 폐기물과 녹색 목록상의 일부 폐기물에 적용된다.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 적색목록 폐기물은 이미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단계 관리시스템은 1992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1) 정부는 1997년 3월까지 부분적 녹색 및 황갈색 목록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작성한다. (2) 관련부처는 1997년 5월까지 목록안을 협의한다. (3) 1997년 8월까지 초안에 대한 일반의 의견을 청취한다. (4) 1997년 12월까지 국회 의결을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한다. (5) 정부는 늦어도 1998년 6월까지 개정법률에 따라 3단계 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

한국은 계속하여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관련문제에 관하여 상기 결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관리방법을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한국은 그러한 변동상황에 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계속 통보한다.

재 정

- 국제조세협정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표준서식에 관한 이사회 권고 [C(81)39(Final)]

입 장

현재까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의 표준서식 대신에 고유의 서식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표준서식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용할 계획이다.

- 유산·상속 및 증여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이사회 권고 [C(82)64(Final)]

입 장

한국은 권고 I. 2항에 언급된 표준협약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 소득 및 자본에 대한 표준조세협약에 관한 이사회 권고 [C(94)11(Final)]

한국은 다음과 같은 유보 및 입장을 전제로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표준조세협약을 따른다.

제2조 제1항과 관련하여 한국은 동 협약이 자본에 대한 조세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제1항의 해당부분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제4조 제3항과 관련하여 한국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언급한 표준조세협약 관련조항의 규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실질적 관리장소 대신에 한국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는 용어를 협약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제5조와 관련하여 한국은 제3항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건축공사 현장 또는 건설이나 설립공사는 고정사업장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또한 한국은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건축공사현장 또는 건설이나 설립공사와 관련한 감독활동이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기업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입장을 유보한다.

제12조 제1항과 관련하여 한국은 사용료에 대한 원천 과세권을 유보한다.

제12조와 관련하여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이라는 문구를 제2항에 추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3조 제4항과 관련하여 한국은 자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을 유보한다. 또한, 주식이나 기타 권리를 통하여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경영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 동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한국은 과세권을 유보한다.

관 광

- 국제관광정책에 관한 이사회 결정·권고 [C(85)165(Final)]
한국은 다음과 같은 부속서 I에 대한 유보와 부속서 II에 대한 입장을 전제로 이 결정·권고를 수락한다.

부속서 I에 대한 유보

나)절

형태나 알콜 성분에 관계없이 주류의 면세 수입한도는 1병(용량은 1리터이하)이다.

다)절

관광 홍보 및 촉진용 물품의 면세수입 허용기간은 1년이다.

라)절 i)

국제운전면허증은 요구된다.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단기(90일)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라)절 ii)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이 발급한 등록증만이 인정된다.

라)절 iii)

한국은 국제 제3자 증서(녹색카드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절 iv) 및 v)

임시 수입절차는 자동차(예 :승용차)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마)절 i)

국제항공운수에 사용되는 지상조업장비에 대하여는 임시수입절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II에 대한 입장

가)절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국민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까지의 체류에 대해서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 60일까지 사증면제

호주, 일본, 미국 : 사증 필요

가)세절 ii)

호주, 일본 및 미국과는 복수사증 발급협정이 체결되었다. 사증의 유효기간은 사증의 발급일로부터 개시된다. 단수 입국사증은 3개월, 복수 입국사증은 1년간 유효하다.

나)절

출국 여행객에 대하여 9,000원의 공항시설 이용료가 부과된다.

3. 한국이 과실로 상기 2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구의 어떠한 규범에 대해서 철회 또는 입장표명을 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 가입서 기탁일후 1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동 문제를 이사회에 제기한다.

각료선언

4. 한국은 회원국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체제내에서 채택한 각료선언에 표명된 정책목표에 공감하며, 부속서 4에 언급된 사항들에 참여하고자 한다.

일부 활동 및 기관 참여

5. 한국은 부속서 5에 언급된 제한된 수의 회원국 관련 활동 및 기관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한국은 제한된 수의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관계하는 특별활동분야와 관련된 여타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고려할 것이다.

과거 체결된 협정의 종료

6. 한국은 협약 가입일부터 1990년 10월 10일, 1991년 9월 12일, 1993년 5월 24일, 1993년 9월 20일, 1994년 5월 1일, 1994년 9월 12일 서한교환에 의하여 공식화된, 이사회조선작업반, 개발센터, 원자력기구, 철강위원회, 원자력기구 데이터뱅크와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및 그 보조기관 참여에 관한 한국과 기구간의 협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가입일부터 한국은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보조기관에 계속 참여한다.

7.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목적 및 임무와 기구의 회원국 지위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여타 국제기구와 그룹에 참여한다.

부 속 서 1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 대한 유보 1997년 1월 1일 기준

목록 가 직접투자 I/가, 나

--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

주 : 이 유보는 다음사항에만 적용된다.

- i) 다음기업의 주식을 취득
 - 가) 당해 기업 이사회가 동의를 하지 않은 한국기업
 - 나) 비거주자가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그 비거주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총 자산 2조원 이상의 한국기업

- ii) 비거주 모기업 또는 관계회사가 일정한 한도내에서 시설재 도입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한 차관을 제외한 5년 이상의 장기차관¹⁾

- iii) 다음과 같은 부동산투자
 - 가) 토지개발공급업
 - 나) 제주도 중문지역을 제외한 골프장 운영업
 - 다) 하나 이상의 외국정부가 과반수 이상 투자한 법인에 의한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업을 제외한 건물 임대업 및 분양공급업²⁾
 - 라) 국회의 동의를 없는 광업권

- iv) 다음과 같은 기초산업 투자
 - 가) 보통작물생산업
 - 나) 한국인과 합작하는 형태가 아닌 곡물도정업³⁾
 - 다) 육우사육업 및 고기도매업⁴⁾

-
- 1). 1999년 12월 31일부터 이 유보는 제조업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시설재 도입용 이외의 용도로 도입하는 차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1997년 12월 31일부터 외국투자자가 50% 이하로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는 건물 임대업 및 분양공급업이 허용된다.
 - 3). 1998년 12월 31일부터 이 유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1999년 12월 31일부터 외국투자자가 5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는 육우사육업이 허용된다. 2000년 12월 31일부터 외국투자자가 5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는 고기도매업이 허용된다.

- 라) 한국인과 합작하는 형태가 아닌 소주 제조업 및 주정제조업⁵⁾
- 마) 내수 및 해안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서의 어업

- v) 외국투자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원유정제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주유소 운영업에 대한 투자⁶⁾

- vi)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설립
 - 가) 은행의 현지법인⁷⁾
 - 나) 상호신용금고
 - 다) 외국투자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신용조사회사 및 그 회사의 주식 취득
 - 라) 증권회사의 현지법인⁸⁾ 및 외국투자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이러한 회사에 대한 지분의 참여⁹⁾
 - 마) 설립시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이고 외국투자자가 40% 이상 5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 합작증권회사
 - 바) 은행간 금융자산 중개를 영위하는 회사
 - 사) 기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 아) vi)…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투자회사, 투자신탁회사 및 신탁회사의 현지법인 및 그 회사의 지분취득. 단, 외국인의 기존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50% 미만 지분참여는 허용¹⁰⁾
 - 자) 사무소의 설립일이 1년이상 경과되지 않은 경우의 투자신탁회사 지점¹¹⁾
 - 차) 투자자문서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법인 또는 합작법인 및 그러한 회사의 지분을 외국 투자자가 50% 이상 취득¹²⁾
 - 카) 상품교환업
 - 타) 한국 보험회사와의 합작법인
 - 파) 보험중개회사, 그리고 보험감정업, 보험 및 연금과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¹³⁾
 - 하) 생명보험회사 독립대리점¹⁴⁾

-
- 5). 1997년 12월 31일부터 이 유보는 소주제조업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998년 12월 31일부터 iv) 라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6). 1998년 12월 31일부터 v)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7). 1998년 12월 1일부터 이 유보는 은행의 현지법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8). 1998년 12월 1일부터 이 유보는 증권회사의 현지법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9). 1998년 12월 1일부터 이 유보는 기존 증권회사에 대한 지분참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10). 1997년 12월 1일부터 이 유보는 기존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1). 1998년 12월 1일부터 vi)…자)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12). 1997년 12월 1일부터 이 유보는 투자자문서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법인 또는 합작법인의 설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998년 12월 1일부터 이 유보는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13). 1998년 4월 1일부터 vi)…파)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14). 1997년 4월 1일부터 이 유보는 생명보험회사 독립대리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vii) 다음과 같은 운송업 투자
 - 가) 외국투자자가 20%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한 경우의 항공운송업¹⁵⁾
 - 나) 한국국적의 선박
 - 다) 외국투자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내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해운회사
 - 라) LNG 및 LPG 운송, 제3국간 화물운송 및 카훼리선에 의한 컨테이너 화물운송을 제외한 외항화물운송을 영위하는 해운회사¹⁶⁾
 - 마) 예선업을 영위하는 해운회사
- viii) 다음과 같은 통신관련업 투자
 - 가) 뉴스제공업 및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 회사¹⁷⁾
 - 나) 외국투자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서적을 출판하는 기업
 - 다) 외국투자자가 15% 이하의 지분을 소유한 유선방송의 프로그램의 공급기업 및 종합유선방송 기업을 제외한 방송회사
 - 라) 외국인이 1/3 이하의 의결권을 가진 무선 통신회사를 제외한 통신회사
- ix) 다음과 같은 기타투자
 - 가) 전문건설 분야의 지점¹⁸⁾
 - 나) 도박 분야

-- 거주자에 의한 해외투자

주 : 이 유보는 다음사항에만 적용된다.

- i)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 또는 미화 1백만불중 큰 액수를 초과하는 개인기업가의 투자
- ii) 예상되는 해외 직접투자 금액의 최소 10%는 투자자의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는 요건; 미화 1억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율이 20%로 인상된다. 이 요건은 1997년 12월 31일자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목록 나 부동산 거래
III/가1

-
- 15). 1999년 12월 31일부터 외국투자자가 50%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항공운송업 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6). 1998년 12월 31일부터 이 유보는 외항화물운송업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17). 1997년 12월 31일부터 외국투자자가 25%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이 유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999년 12월 31일부터는 외국투자자가 25%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뉴스제공업에 대한 투자에는 이 유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18). 1997년 12월 31일부터 ix) 항은 도박분야에 대한 투자로 변경된다.

및 나1

-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건축 및 구매
- 거주자에 의한 해외 건축 및 구매
주 : 이 유보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i) 상용 또는 공무 목적으로 해외에 최소 2년간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자연인 거주자에 의한 미화 50만불을 초과하지 않고 국내로부터의 송금액이 미화 3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 ii) 거주 기업에 의한 영업목적의 부동산

목록 가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 IV/가1 및 다1

- 국내증권의 외국자본시장에서의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주 : 이 유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외화표시증권의 발행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i) 발행자
 - 가) 외국환은행. 1999년 12월 31일자로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등급평가기관에서 우량기업으로 판정받은 회사(BBB이상). 1999년 12월 31일자로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 첨단기술산업에 속하는 회사. 1999년 12월 31일자로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회사, 또는
 - 마) 국가 소유 기업. 1999년 12월 31일자로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ii) 발행자금의 용도
 - 가) 역외금융차입(외국환은행의 경우)
 - 나) 자본제도입자금, 외화증권의 발행사업목적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최신기술도입비
 - 다) 3년 이상 기간의 연불조건으로 수출할 완성자본재의 생산을 위한 부품도입자금
 - 라) 해외투자자금 또는 해외사업자금 (해외시장 개척 자금 포함)
 - 마) 외화채무 조기상환자금
 - 바) 1997년 12월 31일부터 민자유치 제1종시설 사업중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사비용 조달용
 - 사)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용도

iii) 해외에서 발행되는 증권총액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1999년 12월 31일자로 연간 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구매

주 : 이 유보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i) 총발행 주식수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 상장기업 주식의 구매. 이 한도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23%로, 1998년 12월 31일 까지는 26%로,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29%로 각각 인상되고 2000년 12월31일까지는 폐지된다.
- ii) 단일 투자자에 의한 총발행 주식수의 5%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 상장기업 주식의 구매. 이 한도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0%로 인상된다.
- iii) 총발행 주식수의 15% 미만에 해당하는 일정 공법인의 상장주식의 구매
- iv) 총발행금액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상장 중소기업발행 무보증 전환사채의 구매. 1998년 12월31일부터는 일정한도내에서 기타 기업에서 발행한 무보증 전환사채의 구매
- v) 단일 투자자에 의한 총발행금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상장 중소기업 발행 무보증 전환사채의 구매. 1998년 12월 31일부터는 일정한도내에서 기타 기업에서 발행한 무보증 전환사채의 구매
- vi) 1997년 12월 1일부터 일정한도내에서 만기 5년이상의 중소기업 발행 무보증채권의 구매. 1999년 12월 1일부터는 일정한도내에서 기타 기업 발행 만기 5년이상의 무보증채권의 구매
- vii) 승인된 국가펀드의 일정한도 내에서의 국내채권과 상장주식의 구매 및 펀드 순자산 25% 내에서의 비상장 주식의 구매
- viii) 금융기관의 경우 승인된 거주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증권의 구매

목록 나 단기 금융시장 거래
V/가1,
다1, 다3 및 다4
라3 및 라4

-- 해외단기금융시장에서의 국내증권 및 기타증서의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주 : 이 유보는 다음 조건 충족시 외화표시증권의 발행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발행자

가) 외국환은행. 1999년 12월 31일자로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등급평가기관에서 우량기업으로 판정받은 회사(BBB이상). 1999년 12월 31일자로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 첨단기술산업에 속하는 회사. 1999년 12월 31일자로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회사, 또는
- 마) 국가 소유 기업. 1999년 12월 31일자로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ii) 발행자금의 용도

- 가) 역외금융차입(외국환은행의 경우)
- 나) 자본제도입자금, 외화증권의 발행사업목적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최신기술도입비
- 다) 3년 이상 기간의 연불조건으로 수출할 완성자본재의 생산을 위한 부품도입자금
- 라) 해외투자자금 또는 해외사업자금 (해외시장 개척 자금 포함)
- 마) 외화채무 조기상환자금
- 바) 1997년 12월 31일부터 민자유치 제1종시설 사업중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사비용 조달용
- 사)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용도

iii) 해외에서 발행되는 증권총액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1999년 12월 31일자로 연간 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단기 금융시장 증권 구매
주 : 이 유보는 일정 한도내의 승인된 국가펀드에 의한 구매 및 금융기관의 경우 승인된 거주 외국환 은행으로부터의 증권 구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기타 단기 금융시장 증서를 통한 대부
주 : 이 유보는 비거주 은행 및 승인된 국내 외국환은행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기타 단기 금융시장 증서를 통한 차입
주 : 이 유보는 비거주 은행 및 승인된 국내 외국환은행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기타 단기 금융시장 증서를 통한 대부
주 : 이 유보는 승인된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대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기타 단기 금융시장 증서를 통한 차입
주 : 이 유보는 승인된 국내 외국환은행 및 비거주 은행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목록 나 기타 양도성 금융상품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의 거래

VI/가1

및 2,

나1 및 2,

다1, 다3,

라1 내지 3,

- 국내 금융상품 및 권리의 해외 금융시장에서의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 국내 금융상품 및 권리의 해외공인 금융시장에서의 상장
- 외국 금융상품 및 권리의 국내금융시장에서의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 외국 금융상품 및 권리의 국내 공인 금융시장에서의 상장
-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구매
주 : 이 유보는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총 미결제 약정수량의 개별 투자건당 3% 미만
그리고 총투자의 15% 미만의 주가 지수 선물 구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기타 자산과의 교환
-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구매
주 : 이 유보는 외국환은행 및 승인된 실수요 거래와 관련된 헤징(hedging) 목적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판매
주 : 이 유보는 외국환은행 및 승인된 실수요 거래와 관련된 헤징(hedging) 목적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기타 자산과의 교환
주 : 이 유보는 외국환은행 및 승인된 실수요 거래와 관련된 헤징(hedging) 목적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목록 가 공동투자증권의 거래

VII/가1

나1, 다1,

- 국내 공동투자증권의 외국 증권시장에서의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주 : 이 유보는 일정한도내에서 승인된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국제 및 혼합수익증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는 1998년 12월 31일자로 주식형 공동투자증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외국 공동투자증권의 국내증권시장에서의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발행

주 : 이 유보는 외국 증권에만 투자하는 외국 투자신탁회사의 공동투자증권 발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구매

주 : 이 유보는 비거주자가 주식편입이 80% 이상이 되는 국내 투자신탁회사에 의해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형 공동투자증권의 20% 미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한도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폐지된다.

목록 가 **원인이 되는 해당거래에 거주자가 참여하는 경우의 국제상거래**
및 국제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되는 신용

VIII(i)/가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주 : 이 유보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i) 대기업은 60일내지 180일, 중소기업은 90일내지 180일이내에서 관세율 10% 미만인 품목의 연지급수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997년 12월 31일자로 모든 형태의 연지급 수입 허용기간을 180일로 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 31일자로 180일로 확대한다.
- ii)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180일내지 3년이내의 분할지급
- iii) 대기업에 대한 전년도 수출가액의 15%이내의 영수한도제한을 제외한 수출선수금. 대기업에 대한 영수한도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20%로 인상되고 1999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된다.
- iv) 선박등 물품의 제작기간에 따른 수출대금의 80%이내의 수출착수금. 이 영수한도는 1999년 12월 31일자로 100%로 상향 조정된다.
- v) 중소기업, 민자유치 제1종시설 사업자,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간한도내에서의 만기 3년이상, 100만불 규모이상의 시설제도입용 신용. 1997년 12월 31일부터 첨단기술 영위 대기업의 시설제도입용 신용. 1996년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의 시설제도입용 신용의 연간한도는 폐지되고 1999년 12월 31일자로 여타기업의 시설제도입용 신용의 연간한도도 폐지된다.
- vi) 용역제공 완료후 1년을 초과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개시전 1년을 초과하여 용역대가를 사전에 영수하는 경우가 아닌 국제 용역거래와 관련된 신용

목록 가 **원인이 되는 해당거래에 거주자가 참여하는 경우의 국제상거래
및 국제용역 제공과 직접관련되는 신용**

VIII(i)/나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주 : 이 유보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i) 연불수출 및 수입전도금
 - ii) 기타 신용
 - 가) 승인된 외국환은행 및 기관투자가에 의한 1인당 1억원 이내의 원화신용공여
 - 나) 외국환은행, 기관투자가, 종합무역상사에 의한 미화 1000만불 이내 외화신용공여 및 기타 기업에 의한 미화 30만불 이내 외화신용공여

목록 나 **원인이 되는 해당거래에 거주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의 국제상거래
및 국제용역 제공과 직접관련되는 신용**

VIII(ii)/나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주 : 이 유보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i) 외화신용공여
 - ii) 승인된 외국환은행 및 기관투자가에 의한 1인당 1억원 이내의 원화신용공여

목록 나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

IX/가, 나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및 대부
주 : 이 유보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i) 승인된 거주 외국환은행
 - ii) 일정한도내에서의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의 잔여 만기일 1년 이상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표시 부채에 대한 상환자금융 외화차입
 - iii) 일정한 한도내에서 1997년 12월 31일부터 민자유치 제1종시설 사업중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사비용 조달용 외화 차입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및 대부
주 : 이 유보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i) 외화신용공여

- ii) 승인된 외국환은행 및 기관투자가의 동일인당 1억원 이내의 원화 표시 신용 및 대부

목록 가 국제무역·무역외 또는 자본거래와 관련되지 않거나 해당 국제 거래에 거주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의 담보, 보증 및 금융 백업 퍼실리티

X(ii)/가2

- 거주자가 비거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 및 보증
주 : 이 유보는 다음사항에만 적용된다.

- i) 원화표시 담보 및 보증
- ii)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자금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 모기업의 지급 보증으로서 현지법인 투자금액의 50%를 초과하는 모기업 보증에 대해 적용되는 해외투자 자기자본 조달요건 대상인 경우. 이 조건은 1997년 12월 31일자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목록 가 예금계정의 거래

XI/가1

-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에의 원화예금
주 : 이 유보는 다음사항에만 적용된다.
 - i) “자유원화” 계정이 아닌 원화계정으로부터의 외화환전 및 대외 송금
 - ii) 경상거래 및 재보험계약결제 이외의 용도로 “자유원화” 계정예의 예치
 - iii) 경상거래 및 재보험계약 결제 그리고 국내주식투자 이외의 용도로 “자유원화” 계정자금의 처분

목록 나 예금계정의 거래

XI/나1

및 2

- 거주자에 의한 외국 금융기관과의 원화예금 계정거래
주 : 이 유보는 거주 여행자가 해외에 반출한 원화를 외국은행에 예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거주자에 의한 외국 금융기관과의 외화예금 계정 거래
주 : 이 유보는 다음에 의한 예금 계정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i) 외국환은행
 - ii) 기관투자가

- iii) 일반법인 투자자의(회사당) 미화 3백만불 이내 예금. 이 예금한도는 1998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지 아니한다.
- iv) 개인의 한국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에의 1인당 연간 미화 5만불 이내 예금. 비거주 적격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한도 및 제한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지 아니한다.
- v) 해외근로자

목록 나 외국환거래
XII/나1,
2 및 3

-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내국통화대가 외화매입
 주 : 이 유보는 거주 여행자가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원화액수를 초과하는 외화매입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외국통화대가 원화매입
 주 : 이 유보는 다음사항에만 적용된다.
 - i) 거주 여행자가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원화액수를 초과하는 원화 재매입
 - ii) 다음사항을 제외하고 국내로 회수되어야 할 해외에서 취득한 외환.
 - 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총 해외계약잔액의 30% 혹은 미화 3백만불중 큰 액수이내
 - 나) 종합무역상사 및 전년도 수출입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기업의 경우 최고 미화 5억불 이내에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50%까지
 - 다) 거래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의 액수

-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외국통화간 교환
 주 : 이 유보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i) 승인된 거주 외국환은행
 - ii) 일반 거주자의 허용된 실수요 경상 또는 자본거래
 - iii) 해외보유가 인정된 외환

자본자산의 실물 이동

-- 지급수단의 수입

주 : 이 유보는 8백만원을 초과하는 원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지급수단의 수출

주 : 이 유보는 8백만원을 초과하는 원화의 수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부 속 서 2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에 대한 유보 1997년 1월 1일 기준

가/4. 공사계약(공개 입찰후 주로 전문회사가 고정된 가격에 수행하는 건물, 도로, 교량, 항만 등의
신축 및 유지 보수)

주 : 이 유보는 부지 조사업이외의 분야에서는 공사계약 체결이전에 한국내에 상업적
주체가 있는 한에 있어서 적용된다.

다/1. 해상 화물운송서비스(용선, 항만비용, 어선관련 지불금 등 포함)19)

주 : 이 유보는 한국 국적선 또는 한국국민에 의한 할부구매조건부 나용선에 대하여만 허가된 석탄, 철광석 및 액화 가스의 운송에만 적용된다. 이 유보는 1998년 12월 31일자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4. 기타 모든 보험

부속서 가에 대한 부속서 I, 제I부, 제5항

주 : 이 유보는 항공, 장기상해, 여행 및 선박과 관련된 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해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만 적용된다.

라/5. 재보험 및 재재보험

부속서 가에 대한 부속서 I, 제II부

주 : 이 유보는 항공, 재산, 선박, 장기손해, 사고, 근재, 자동차, 적하, 보증보험과 관련한 재보험 및 재재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사항은 1997년 4월 1일자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2. 은행 및 투자서비스

주 : 이 유보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수 및 중개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마/4. 자산관리

주 : 이 유보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마/5. 자문 및 대리서비스

주 : 이 유보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자문 및 대리서비스에만 적용된다. 이 유보는 1998년 12월 1일자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19). 동일 국가의 2개항간의 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타국 선박의 운송이 허용될 경우 이전은 허용되어야 한다.

마/7.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비거주 투자자의 지점·대리점 등의 설치 및 영업에 관한 조건

부속서 가의 부속서Ⅱ, 제1부, 4 가) 및 8 나)

1항의 유보는 다음사항과 관련된다.

- 신용 정보회사, 상호신용금고, 단기투자금융회사, 중개인 및 종합금융회사의 지사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투자신탁회사의 지점설립이전에 대표 사무소가 1년동안 운영되어야 한다. 이 유보는 1998년 12월 1일자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가)항의 유보는 비거주 은행의 대표사무소 설립시 사전승인을 요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8 나)항의 유보는 비거주 기관의 첫 지점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은 해외로부터 도입된 외환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된다.

바/1. 사적 또는 극장 상영용 또는 TV방송용 영화 및 기타 기록 매체(재생수단 불문)의 수출·수입 유통 및 사용

주 : 이 유보는 다음사항에만 적용된다.

- i) 극장상영용, 또는 TV 방송용 외국영화 및 기타 기록 매체에 대한 할당제
- ii) 승인 또는 추천이 필요한 극장상영용, 또는 TV 방송용 외국영화 및 기타 기록매체의 수입

타/6. 전문용역(회계사, 예술가, 컨설턴트, 의사, 기술자, 전문가, 변호사 등의 서비스 포함)

주 : 이 유보는 외국 변호사의 서비스제공에만 적용된다.

부 속 서 3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 1997년 1월 1일 기준

가. 국가차원에서의 예외

I. 설립된 외국인지배기업에 의한 투자

일반적 정의 : 이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 “외국인 참여기업” :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외국투자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
- “외국인지배기업” :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그 기업이 내국민대우 등 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 설립된 기업
- “외국투자자” : 외국인, 외국인참여기업, 외국인지배기업
- “(활동)을 영위” : 관련 활동을 영위하거나, 그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것

다음의 예외를 관장하는 근거는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이다.

부동산 : 외국인참여기업이 토지개발 공급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부동산 : 외국인참여기업이 건물 임대업 및 분양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1997년 12월 31일부터는 이러한 활동이 외국인투자자가 5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는 허용된다.

광업 : 외국인지배기업이 국회의 동의없이 광업권을 소유할 수 없다.

근거 : 광업법

농업 : 외국인참여기업이 보통작물생산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농업 : 199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참여기업이 한국인과 합작하는 형태를 제외한 곡물도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농업 : 외국인참여기업이 육우사육업 및 고기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투자자가 50% 미만으로 지분을 소유한 기업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육우사육업에 2000년 12월 31일부터 고기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허용된다.

농공업 : 외국인참여기업이 한국인과 합작하는 형태를 제외한 다음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 1998년 12월 31일까지 주정제조업

· 1997년 12월 31일까지 소주제조업

어업 : 외국인참여기업이 근해어업 및 한국해안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서의 연안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석유 및 석유관련업 : 199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지배기업이 원유정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 석유사업법

주유소 운영업 : 199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참여기업이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 석유사업법

비은행금융기관 : 외국인지배기업이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거나 동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비은행금융기관 : 외국인참여기업이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거나 동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비은행금융기관 : 외국투자자가 단기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와 같은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비은행금융기관 : 기존 투자신탁회사의 지분을 외국인이 50% 이하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참여기업이 투자신탁회사 또는 신탁회사의 설립 또는 그러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1997년 12월 1일부터 외국투자자에게 기존 투자신탁회사의 지분을 100%까지 소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새로운 투자신탁회사의 설립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외국투자자에게 허용된다.

비은행금융기관 : 외국투자자가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외국인이 이러한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게 되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1997년 12월 1일부터 외국투자자에 의한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1998년 12월 1일부터 외국투자자가 기존 투자자문회사에 100%까지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증권회사 : 외국투자자가 기존 증권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외국투자자는 납입자본금이 최소한 500억원이 되고 외국투자자의 참여비율이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권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1998년 12월 1일부터는 외국투자자에 기존 증권사의 지분취득이 허용된다.

금융자산중개업 : 외국인참여기업이 은행간 시장에서 금융자산 중개를 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상품교환업 : 외국인참여기업이 상품교환업을 설립하거나 참여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보험업 : 1998년 4월 1일까지는 외국인참여기업이 보험중개, 보험감정 또는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 서비스를 포함한 보험 또는 연금관리에 부수되는 기타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항공운송업 : 외국투자자가 20%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항공운송업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1999년 12월 31일 부터 항공운송업이 외국투자자가 5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허용된다.

해운 : 외국인참여기업이 한국국적의 선박을 소유하거나, 예선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LNG, LPG 운송, 제3국간 화물 운송, 카훼리선에 의한 컨테이너 운송을 제외한 외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해운 : 외국인지배기업이 한국 수역에서 내항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뉴스제공업 : 외국인참여기업이 뉴스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1999년 12월 31일부터는 외국투자자가 25%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허용된다.

출판업 : 외국인참여기업이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1999년 12월 31일부터는 외국투자자가 25%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허용된다.

출판업 : 외국투자자가 서적 또는 브로슈어를 발간하는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방송업 : 외국인참여기업이 외국투자자가 15% 이하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의한 유선방

송의 프로그램 공급업 또는 종합유선방송국을 제외한 방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통신업 : 외국인참여기업이 외국투자자가 1/3 이하의 의결권을 소유한 무선통신업을 제외한 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도박 : 외국인참여기업이 도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다.

II. 공적 지원 및 보조금

외국인지배기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부속서 4

한국이 참여하는 선언

교 육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정책에 관한 선언 - 1978.10.20.

고용, 노동 및 사회문제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선언 - 1980.4.16.-17.

기술변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선언 - 1986.11.19.

환 경

환경정책에 관한 선언 - 1974.11.14.

미래환경정책에 관한 선언 - 1979.5.8.

“환경 : 미래를 위한 자원”에 관한 선언 - 1985.6.20.

남 위험 감소에 관한 선언 - 1996.2.19.-20.

정보, 컴퓨터 및 통신정책

국가간 데이터 흐름에 관한 선언 - 1985.4.11.

과학 및 기술정책

과학 및 기술의 미래정책에 관한 선언 - 1981.3.19.-20.

무 역

무역정책에 관한 선언 - 1980.6.4.

부속서 5

한국이 참여하고자 하는 일부 회원국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 활동 및 기관

농 업

협력 연구 프로그램 : 지속가능농업체제를 위한 생물학적 자원관리

소비자 문제

소비자 안전에 관한 작업반

소비자 시장에 관한 작업반

교 육

교육연구개혁센터(CERI)

고등교육의 제도적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교육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PEB)

환 경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특별프로그램

현존화학물질에 관한 운영그룹

우수실험실운영에 관한 패널

위험평가자문기구

과학, 기술 및 산업

펄프와 종이에 관한 특별작업반

국토개발

지역경제 및 고용 개발에 관한 협력활동 프로그램

무 역

수출신용 및 신용보증그룹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을 초청하는 이사회 결정

(1996년 10월 11일 제885차 이사회 회의에서 채택)

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특히 협약 제5조 가)와 제16조를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동 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수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1996년 10월 9일자 선언문을 고려하여,

1996년 4월 15일 파리에서 서명된 동 기구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 협정을 고려하고,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와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의 보고서 [C(96)180], 보험위원회 [C(96)124], 자본시장위원회 [C(96)168]와 해운위원회의 견해 [부속서 II내지 C(96)183], 환경정책위원회의 견해 [C(96)184]와 재정위원회의 견해 [C(96)137]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검토된 문서들 [C(96)176] 외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문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고용, 노동 및 사회문제위원회 [C/NM(96)45]와 무역위원회의 보고서 [C(96)174]를 고려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동 기구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상기 선언문에 제시된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협약 가입을 초청한다.

이 결정을 채택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승인한다.

이사회는

-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을 초청하는 이사회 결정일자와 한국의 협약가입서 기탁일자 사이에 이사회에 의해 채택될 절차규칙의 규칙 18 가) i) 범위내의 어떠한 결정도 한국정부에 통보하도록 지시한다.
- 한국 정부는 상기항과 같이 언급된 결정에 가입할 의사유무를 60일 이내에 동 기구에 통보해야 하고, 만약 한국 정부가 특정 결정에 가입할 의사가 없거나 그에 관한 입장 또는 유보를 제의하고자 할 경우 그 사항은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대한민국이 결정에 가입할 용의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은 어떠한 결정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가입시 한국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는 동 기구의 예산에 관한 결정에는 이 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선언문과 이사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초청에

관한 협정을 구성한다.

1996년 10월 25일 파리에서 영어 및 프랑스어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여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대표하